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

2016년 5월 20일

1. 제안이유

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”을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 요구 할 때 비용지급 논란을 예방하고자 비용지급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비용 지급의 예외 조항에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”을 신설함(제3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불필요

다. 사전협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

○ 협의결과: 박문수 의원이 서면질문(질문번호 2016-031, 2016.2.4)을 통해서 “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은 강북구의회 관련 업무 수행시 별도 여비 지급은 없으나, 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.”는 답변서를 받았음.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2호

**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